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143

제출일자 : 2022. 9. 1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혁신센터의 정의(안 제2조)
나. 청년혁신센터의 기능(안 제4조)
다. 청년혁신센터의 관리·운영 등(안 제5조)
라. 청년혁신센터의 위탁운영 등(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제3조
(2)「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위탁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중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8. 5.~ 8. 2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혁신센터”란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인 청년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년혁신센터 내 창업 입주공간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그 창업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혁신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군 관할구역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자 등”이라 한다)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업에 따른 청년을 선정할 때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해 그 관리 · 운영사무의 일부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센터 관리 · 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 등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창업 및 예비창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 각 호 사업 내용에 따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공유재산, 물품 및 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휘 ·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리 · 운영현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 운영 세부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 · 운영 및 제4조 각 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때에는 그 시행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지휘 · 감독 결과 관리 ·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관리 ·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 관리 ·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입주공간을 포함한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훼손,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 하는 경우

2. 무단으로 입주공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5.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6.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7.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8. 창업 지원 사업
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10.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달성군 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재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용이 대략적으로 예측은 되나

·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그에 따른 각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비용을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